



## 대구대학교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의 산·학교류 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지역금융의 발전과 지역민에 대한 금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지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유도하는 한편 지역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의 구축과 공동의 이해 증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,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
- 나. 대구대학교 재학생의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
- 다. 다문화 가정 주부 및 그 자녀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
- 라. 초·중등 학생의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
- 마. 기타 지역금융의 발전과 금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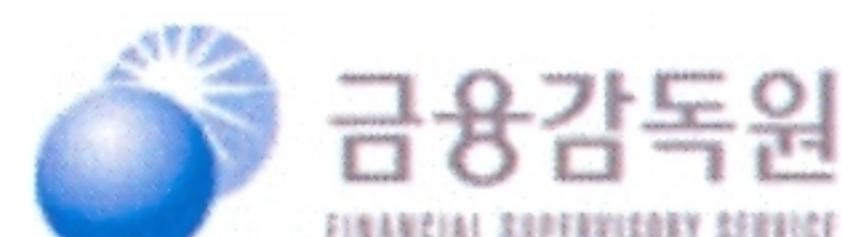
**제3조(협약이행)** 양 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고 세부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효력)**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, 매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2010년 4월 27일



총장 홍덕률  
홍덕률



대구지원장 김동건  
김동건